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및 지원 >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5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및 지원	2

I. 개요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및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제3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1조(기금의 사용)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30조의6에 따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u> <u>제30조의6(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이하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수련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하여 중증외상 분야를 담당할 전문의를 양성하고 중증외상 치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 중증외상 분야 전문의의 양성 및 중증외상 치료역량의 강화와 관련한 현행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분야 전문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응급의료기금)¹⁾을 통하여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지원하는 전문의(이하 “수련전문의”)에 대해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음.

1)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구축(응급의료기금, 2833-317) 사업의 내역사업
2025년 계획현액: 8억 6,800만원 = 7명 × (1인당 인건비 8,800만원 + 교육비 3,600만원)

- 외상학 세부전문의²⁾는 중증외상 분야에 있어 전문적 자질을 갖춘 전문의로, 대한외상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³⁾에서 2년의 수련과정 및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의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함.
- 동 사업의 2025년도 모집인원은 총 7명이며, 지원액은 수련전문의 1인당 총 1억 2,400만원 이내임(1인당 인건비 연 8,800만원 이내 + 교육비 연 3,600만원 이내).
- * 최근 3년간 연평균 외상학 세부전문의 배출인원(동 사업 지원인원 및 그 외 인원의 총합)은 20명임(2022년 24명, 2023년 16명, 2024년 20명).

2) 외상학 세부전문의는 대한의학회에서 운영하는 28개 세부·분과전문의 중 하나임.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자격 있는 수련기관(병원)에서 세부·분과 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수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의에게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 이에 대한 인증은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가 담당하며, 세부·분과에 따라 수련기간·수련내용·수련기관·자격인정기준 등은 다를 수 있음. 참고로, 전문의 취득 후 이와 같이 특정 세부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수련 교육과정에 있는 의사는 통상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임상강사·펠로우 등으로 호칭됨. 그런데 현행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주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는 전문주의 전문과목은 구분하고 있으나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에 따라 전문주의 종류를 추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아, 세부·분과전문의는 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님. 참고로 이러한 세부·분과전문의와 전임의를 「의료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임(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292호, 발의 2025. 1. 7.).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대한의학회)>

- 목적: 해당 세부·분과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대한의학회 <https://www.kams.or.kr/business/judge/sub1/index.php>)
- 현황: 28개 세부·분과전문의 운영(5개 세부전문의, 23개 분과전문의) (세부·분과별 상세현황: [참고])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주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주의 전문과목) 전문주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3) 총 27개소(2025. 2. 기준)

< 2025년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요 >

(지원자격)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취득자(25.3월 기준)

(수련병원) 총 17개소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및 권역외상센터 16개소)

¹⁾고려대학교구로병원, ²⁾가천대학교길병원, ³⁾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 ⁴⁾아주대학교병원,
⁵⁾의정부성모병원, ⁶⁾경북대학교병원, ⁷⁾경상대학교병원, ⁸⁾단국대학교병원,
⁹⁾부산대학교병원, ¹⁰⁾안동병원, ¹¹⁾울산대학교병원, ¹²⁾을지대학교병원, ¹³⁾전남대학교병원,
¹⁴⁾충북대학교병원, ¹⁵⁾국립중앙의료원, ¹⁶⁾원광대학교병원, ¹⁷⁾제주한라병원

(지원기간) 1년 단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조건) 수련기간 및 의무근무 두 가지 모두 충족

-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 (2년 과정)
- 수련종료 및 세부전문의 취득 후, 권역외상센터 또는 외상수련기관 의무근무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만큼)
- ※ 수련과정 중도 포기 및 의무근무 미충족 시 지원받은 인건비 반납

(지원내용)

- (인건비) 1년 수련기간 동안 1인당 연 88백만원 이내 지원
- (교육비*) 1년 수련기간 동안 1인당 연 36백만원 이내 지원
 - * 학회 등록비, 해외 연수 숙박비·여비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전액 지원
- 수련종료 및 세부전문의 취득 후, 수련의 지망 권역외상센터 중심으로 우선채용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중증외상 관련 수련전문의 모집” 보도참고자료(2025. 3.)를 바탕으로 작성

□ 또한, 보건복지부는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⁵⁾에 따라 전국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은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외에도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5. 6. 현재 지역외상센터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총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응급의료기금)⁶⁾의 2025년도 계획액은 628억 2,600만원으로, 지원항목은 초기 설치비(시설·장비 등 80억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등 인건비·교육훈련비,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외상체계팀 사업운영비 등임.

□ 국가가 수련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중증외상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외상진료체계를 뒷받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의가 있으나,

위와 같이 현재 응급의료기금 내에서 외상학 세부전문의를 양성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권역외상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제5호마목⁷⁾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규정되고 공공보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구축(응급의료기금, 2833-317) 사업의 내역사업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의료 전달체계⁸⁾에 포함됨. 이는 중증외상 분야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 등의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의료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증외상 분야 공공의료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현 권역외상센터와 신설되는 수련센터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련센터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 포함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제4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며,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이 수립·시행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안의 수련센터 별도 지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며, 향후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 현행법 응급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업무에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이 포함되며 권역외상센터에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중임.
 -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16개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 해당하며 동 16개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인건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여 교육훈련비 등 국비지원 중으로 별도의 수련센터 지정·지원은 중복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수련센터 지정·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기민한 정책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서울특별시) 수련센터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련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단, 보조비율은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제주권역외상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의료기관을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문구 수정 필요
 - 전문의들이 수련 후 외상 전담전문의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 법안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 (대한정형외과학회) 단순히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증 외상센터가 적자를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근본적인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함. 외상 관련 수가의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수련센터뿐만 아니라 수련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교육 등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 (대한의사협회) 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래 사유로 신중한 검토 요청
 - 별도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금 확충 방안을 병행하는 등 기금 조성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 부담, 높은 법적 책임 등 중증외상 전문의 기피 현상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련센터 지정 및 기금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운영 현황
-------------	-----------------------------

구분	학회명	세부·분과 전문분야명	최초 인증일
분과 전문의	대한내과학회	내과 소화기 분과	2004. 7. 14.
		내과 순환기 분과	
		내과 호흡기 분과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내과 신장 분과	
		내과 혈액종양 분과	
		내과 감염 분과	
		내과 알레르기 분과	
		내과 류마티스 분과	
	대한소아 청소년학회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2006. 3. 9.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및호흡기 분과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대한외과학회	외과 간담췌 분과	2012. 11. 13.
		외과 대장항문 분과	
		외과 소아 분과	
		외과 위장관 분과	
		외과 유방질환 분과	2014. 7. 8.
		외과 혈관 분과	2025. 3. 11.
세부 전문의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2005. 6. 14.
	대한소아심장학회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2006. 3. 9.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2008. 4. 15.
	대한외상학회	외상학 세부전문의	2010. 3. 9.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2022. 1. 11.

자료: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business/judge/sub1/sub3.php>), 2025. 6. 기준